

의안번호	제 936 호
의결	년 월 일
연 월 일	(제 회)

충청북도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제안자	의회운영위원장
제안연월일	2021년 12월 15일

충청북도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 안 번 호	936
------------	-----

제안연월일 : 2021년 12월 15일
제 안 자 : 의회운영위원장

1. 제안이유

- 「지방자치법」 및 「지방자치법시행령」 개정('22.1.13.시행)으로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게 됨에 따라 정책지원관의 배치 및 사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

2. 주요내용

- 정책지원관에 관한 사항(안 제4조의2)
 - 위원회에 소속위원회 위원장의 지휘를 받는 정책지원관을 둔다
 -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와 관련하여 의정활동 지원
 - 조례에서 규정한 사무 이외 일반사무에 대하여는 사무처장의 지휘·감독을 받음

3. 조례안전문 : 붙임

4. 신·구조문대비표 : 붙임

5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붙임
- 조례안예고 : 해당없음
- 관련부서협의 : 해당없음
- 비용추계 : 해당없음

충청북도의회 조례 제 호

충청북도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제90조, 제91조”를 “제102조, 제103조”로 한다.

제2조제2항 중 “운영 등 입법 활동”을 “운영과 입법 활동 등”으로 한다.

제3조제2항 중 “통할하고”를 “총괄하고”로 한다.

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4조의2(정책지원관) ① 위원회에 정책지원관을 둔다.

② 정책지원관은 소관 사무에 대하여 소속위원회의 위원장의 지휘를 받으며,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.

1. 조례 제정 · 개폐, 예산 · 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 · 조사 · 분석 지원

2. 충청북도의원(이하 “의원”이라 한다)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 · 분석 지원

3.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

4. 의원의 정책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 · 분석 지원

5. 의원의 공청회 · 세미나 · 토론회 등 개최, 자료 작성 지원

6. 그 밖에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와 관련된 자료 수집 · 분석 · 조사 및 의정활동 지원

③ 정책지원관은 제2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처장의 지휘 · 감독을 받는다.

부 칙

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<p><u>제4조의2(정책지원관) ① 위원회에 정책 지원관을 둔다.</u></p> <p><u>② 정책지원관은 소관 사무에 대하여 소속위원회의 위원장의 지휘를 받으며,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.</u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u>1. 조례 제정·개폐, 예산·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 활동 및 자료 수집·조사·분석 지원</u> <u>2. 충청북도의원(이하 “의원”이라 한다)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·분석 지원</u> <u>3.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</u> <u>4. 의원의 정책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·분석 지원</u> <u>5. 의원의 공청회·세미나·토론회 등 개최, 자료 작성, 참석 등 지원</u> <u>6. 그 밖에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와 관련된 자료 수집·분석·조사 및 의정활동 지원</u> <p><u>③ 정책지원관은 제2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처장의 지휘·감독을 받는다.</u></p>

관계법령

□ 지방자치법 ('21. 10. 19. 일부개정) [시행 '22. 1. 13.]

- 제102조(사무처 등의 설치) ① 시 · 도의회에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처를 둘 수 있으며, 사무처에는 사무처장과 직원을 둔다.
- ② 시 · 군 및 자치구의회에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국이나 사무과를 둘 수 있으며, 사무국 · 사무과에는 사무국장 또는 사무과장과 직원을 둘 수 있다.
-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사무처장 · 사무국장 · 사무과장 및 직원(이하 제103조, 제104조 및 제118조에서 “사무직원”이라 한다)은 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.

- 제41조(의원의 정책지원 전문인력) ①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의회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다.
- ② 정책지원 전문인력은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며, 직급 · 직무 및 임용절차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□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

- 제29조의3(시 · 도의회의 교육 · 학예에 관한 사무의 지원) ① 시 · 도의회의 교육 · 학예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 · 도의회의 사무처에 지원조직과 사무직원을 둈다.
- ② 제1항에 따라 두는 사무직원은 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.
- ③ 제1항에 따라 두는 사무직원은 시 · 도의회의장의 추천에 따라 교육감이 임명한다.